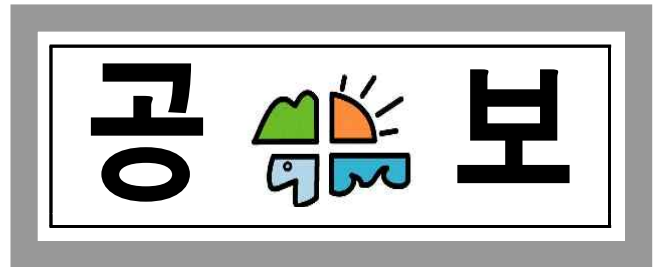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05호 2021년 1월 8일(금)

공 고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공시송달 .. 2
- 2021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4
- 2021년도 속초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9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2020년도 반복부과분)처분 통보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6. ~ 2021. 1. 20.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부과액 (원)	송달불능 사 유
최*순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1길 18, 2층 (교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116,950	주소 불명
문*례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285 (교동)	"	2,906,490	"
김*춘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7 (청호동)	"	2,766,240	"
안*덕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13-1 (청호동)	"	1,058,500	"
최*선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20, 102동 305호 (조양동,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	447,200	"
고*열	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 4 (청호동)	"	2,929,200	"
황*옥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혜선이네횃 집 (대포동, 상가23호)	"	1,182,500	"
고*자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0, B동 선아 횃집 (대포동)	"	1,586,700	"
양*춘	강원도 속초시 선사로2길 7-9 (조양동)	"	4,501,220	"
주식회사진원 산업	강원도 속초시 밤골3길 27, 107동 206호 (교 동, 삼호아파트)	"	520,800	"
한*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6 (중앙동)	"	61,920	"
심*흠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주천강로 1327 (강림 리)	"	131,860	"
박*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6길 36, 201호 (이동)	"	1,182,500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서초동)	"	26,681,120	"
김*희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1길 21, 다동 303호 (설악동, 현대설악빌리지)	"	118,800	"
김*옥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0, 해녀회집 (대포동)	"	1,586,700	"
이*순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0, 상가11호 무한정 (대포동)	"	1,586,700	"
이*자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상가25호 이천횃집 (대포동)	"	1,182,500	"
이*복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상가32호 외옹치민 박횃집 (대포동)	"	1,182,500	"

성명	주소	내용	부과액 (원)	송달불능 사유
김*희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180-12, A동 대북 회윗집 (대포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처분 통보	1,182,500	
권*만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4길 2-1 (영랑동)	"	250,330	
이*선	강원도 속초시 노리5길 37(노학동)	"	421,750	
김*정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학2길 11, 303호 (동서학동, 아카빌)	"	27,540	
엄*길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27(금호동)	"	49,980	
하*준	강원도 속초시 장사향해안길 9	"	7,355,330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2020년도분) 처분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 (☎639-247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1. 6.

속 초 시 장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8.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 대상단지 : 총 149개 단지 / 28,281세대

- 사용검사일 후 10년 미만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보수

※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는 지원 제외(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합계		149	28,281	27	7,305	122	20,976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계	110	27,748	22	7,242	88	20,506
	아파트	83	26,275	18	6,919	65	19,356
	연립주택	27	1,473	4	323	23	1,150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계	39	533	5	63	34	470
	아파트	4	56	1	19	3	37
	연립주택	35	477	4	44	31	433

2. 지원금액

○ 2021년 예산액 : 360백만원

- 보안등 전기요금 : 60백만원(민간경상보조, 307-02)
- 시설물 유지보수 : 3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402-01)

3. 지원기준

규 모(세 대 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①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 제2항 및 동 조례 별표 1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90%까지 우선 지원함.
- ② 사업비 : 지원금액+자부담금액

4. 지원항목

- 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다. 경로당 유지보수
- 라. 단지내 보·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 마.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 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 사.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 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
- 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 차.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 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 타. 그 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안등의 전기요금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90%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W당 37.5원)× 12월×보안등 등수×90%

다.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라. 단지내 보·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주차장을 말한다.

마. 단지 내 공용부분의 상·하수도(저수조 포함) 유지보수 및 준설

- 상·하수도시설 및 저수조는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

6. 세부추진일정

-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2021. 1. 8.
- 나. 지원신청서 접수 : 2021. 1. 11. ~ 2. 12.
- 다. 현지조사 : 2021. 2. 15. ~ 2. 23.
-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21. 3월 중
- 마.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21. 3월 중
-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3월 ~ 11월
- 사.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완료 : 2021. 12월중

7. 지원신청

가.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21. 1. 11. ~ 2. 12.

나. 신청자격자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는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가 연명·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으로 신청

다. 제출처 : 속초시청 건축과 주택팀

라. 신청시 제출서류

-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 3)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 가)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 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 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라) 자기자본 부담액
 - 마) 지원 사업기간
 - 바)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 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초시청 건축과 주택팀 (☎ 033-639-2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속초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연서)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월 8일

속 초 시 장

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비율
계	주민등록	조례 외국인				
70,335	70,239	96	66	70,269	5,406 이상	총수의 1/13 이상

2.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가.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15/1000이상)	서명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구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70,256	10,539 이상	3개 이상	영랑동	4,143	622
			동명동	3,289	494
			금호동	5,606	703
			교 동	8,441	703
			노학동	17,898	703
			조양동	23,859	703
			청호동	4,065	610
			대포동	2,955	444

나. 시의원(지역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단위:명)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서명인수 (총수의 20/1000이상)	서명동수	동별 최소 서명인수		
				구분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가선거구	25,544	5,109	2개 이상	영랑동	4,143	256
				동명동	3,289	256
				금호동	5,606	256
				교 동	8,441	256
				청호동	4,065	256
나선거구	44,712	8,943	1개 이상	노학동	17,898	448
				조양동	23,859	448
				대포동	2,955	448

3.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및 청구 연서주민수

(단위:명)

19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비율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70,322	70,239	83	66	70,256	1,406 이상	총수의 1/50이상

4. 기타사항

위 공표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639-2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